법무부	보다 나은 정부	설 명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즉시 사용가능	총 5쪽 (붙임 1쪽 포함) / 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1.(수)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반재열 02) 2110-4075	담 당 자	김영오 사무관 02) 2110-4082

법무부는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 3. 11.(화) "감염 취약한데 정보는 부족…코로나19 사각지대 놓인 불법체류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법체류자 6천 700명이 자진출국했고 1천 19명이 강제퇴거됐다. 1월 기준 국내 전체 불법체류자의 1.9%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불법체류자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

○ 언어 등 문제로 인한 정보 부족과 검사받으러 갔다가 당국에 적발돼 추방되는 것은 아닌지 등 관련 정보에 어둡다.

《 설명 내용 》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 '19. 12. 11.「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시행 이후 '20. 3 8.까지 자진출국 신고자는 27,405명이고, 자진출국자는 21,054명입니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 20.부터 3. 8.까지 17,803명이 자진출국 신고하였고, 12,091명*이 출국하였습니다.

* 지난 해 10. 2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도입, 출국 3일 ~ 15일전 사전신고를 하므로 자진출국 신고자와 실제 출국자 수는 시차가 있음

□ **자진출국자의 재입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 12. 11.「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20. 6. 30. 까지 자진출국하면 입국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하며, 출국 후 일정 기간(3~6개월) 경과 후 단기방문 비자(C-3, 90일)로 재입국 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입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의 대책과는 달리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과거 국내 불법체류 전력 고려 없이 본국 범죄나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없는 경우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신뢰와 실효성을 높였고, 동 대책에 따라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 혹여 상기 제도를 알지 못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본부 및 지방 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계도활동 시 홍보하고 있음은 물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각국 주한외국공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치료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 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신고 시점으로 간주하여 범칙금 및 입국금지기간 등을 산정하는 등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감염병 검진 및 치료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 3. 11.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여, 이에 따라 자진출국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일에는 영어·중국어·베트남 등 20개국 언어로, 야간 등 공휴일에는 영어·중국어 등 3개국 언어로 예방·행동수칙 안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자 통역서비스 지원 등 체류외국인의 언어적 문제 해결과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중보건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서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가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특성상 체류지가 명확하지 않아 공중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나, 동 대책이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거 자진출국으로 보건 사각지대 발생 방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자진출국자는 출국하자마자 바로 아무 조건 없이 언제라도 재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국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재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이나 결핵 등 감염병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재입국 후에도 국내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체류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안전과 공중보건측면에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부담 없이 감염병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통보의무면제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자진출국 시 감염병 검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붙임> 자진출국 신고자 현황

붙임 **자진출국 신고자 현황**

구 분	자진출국 신고자	자진출국자
’19. 12. 11.～15.	778	731
’19. 12. 16.～22.	1,987	1,400
’19. 12. 23.～29.	1,704	1,634
’19. 12. 30.～’20. 1. 5.	1,619	1,495
’20. 1. 6.～12.	2,003	1,748
’20. 1. 13.～19.	1,511	1,955
’20. 1. 20.～27.	928	1,258
’20. 1. 28.～2.2.	900	687
’20. 2. 3.～9.	1,077	985
’20. 2. 10.～16.	1,031	874
’20. 2. 17.～23.	1,117	925
’20. 2. 24.～3.1.	5,306	1,971
’20. 3. 2.～8.	7,444	5,391
계	27,405	21,054